

-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도로교통공단, 근로복지공단,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,
-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, 건강검진, 운전면허시험, 장애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,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.
-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,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장애심사를 진행한다.
- 다만 장애심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, 종전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했으나,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포상 근거 마련

- 장애인복지법 개정(2022.2.28. 시행)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, 기관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하고,
-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“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,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< 별첨 >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